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p> <p>1.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p> <p>2. 제안이유 ○ 공영차고지 설치에 따른 동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 자 하는 것임.</p> <p>3. 주요골자 가.공영차고지 입주대상 및 입주 우선순위 선 정(안 제4조) 나.입주업체 사용료 규정(안 제5조) 다.공영차고지 관리·위탁 근거규정(안 제9조)</p> <p>4. 검토요지 가.사용료(안 제5조) ○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산출된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고자 하며,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에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계산함 에 있어 재산평정가격은 사용·수익허가 기 간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동조제1항에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을 하한으 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례에서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고 있 어 법령상 문제는 없음. 한편, 충전시설 설치업체의 사용요율은 재 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최소한으로 하고 있음. ○ 시내버스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공영차고지 를 조성하여 제공하는 것은 서울시 버스정 책의 기본방향으로 앞으로 계속될 사업이 나, 공영차고지 조성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차고지 운영에 따른 이익 창출은 하지 못할지라도, 운영관리에 따른 적자가 발생하여 계속하여 예산에서 보전 하는 현상이 일어나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사용요율의 적정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p>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p>	<p>1.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p> <p>2. 제안이유 ○ 2002년까지 서울시가 공사에 출자할 현금 및 현물을 공사의 수권 자본금에 반영코자 하는 것임</p> <p>3. 주요골자 ○ 공사의 자본금 증액(안 제4조) 3조원 → 4조5,000억원으로 조정</p> <p>4. 검토요지 ○ 수권자본금 회사의 이사회에서 증자할 수 있는 최대자 본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의 기재사항이 며, 수권자본금을 정해 놓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주식의 발행으로 자본금을 늘리 는 것으로, 수권자본금의 범위내에서 실제 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으로 확정된 것 이 납입자본금임.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99년에 2조 8,247억원 -2000년에 3조 877억원으로 예상되어 현행 조례상 수권자본금 3조원이 초과되므 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수권자본금의 폭을 4조 5,000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며, 이렇 게 될 경우 2002년까지는 수권자본금의 변 경없이 서울시가 지하철공사에 계속해서 현금이나 현물을 출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p>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1항중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3조원”을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4조 5,000억원”으로 한 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